

##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 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) 법 제46조제2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의2(부수업무 신고의 예외) 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”란 <별표1의3>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로 하고,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약관의 개정 등)

① 법 제54조의3제1항제5호에서 “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기존 금융약관의 명칭만 변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
2.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휴업·부도·파산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
3. 법령 및 고시의 제·개정에 의해 약관을 제·개정하는 경우
4.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약관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법 제

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

5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

②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한다(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, 법 제54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약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약관심사를 계속하기 곤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

2. 약관의 법령위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필요한 경우

3. 약관이 사실상 신규업무를 영위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금융업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
4. 약관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

5. 기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

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통지한다.

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 받

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법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5(광고 등) 시행령 제19조의14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15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이 사망, 질병, 실업, 자연재해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(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한 채무에 한함)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업무를 말한다.

별표1의3 중 제1호의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중 가목의 “ 및 보험대리점 업무” 및 다목, 차목, 카목을 삭제하며, 제4호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을 삭제하고, “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”는 각각 “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출업무 영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제 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u>&lt;신    설&gt;</u></p> <p>제7조의2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) ① <u>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"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.</u></p> <p>② <u>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인력·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 까지 별지 제5호에 따른 신고서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&lt;별표 1의3&gt;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7조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) 법 제46조제2항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.</u></p> <p>제7조의2(부수업무 신고의 예외) <u>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"란 &lt;별표1의3&gt;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</u></p>

1.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

2.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3.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

4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
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

2. 소유하고 있는 인력·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한 업무의 신고일

3.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

4. 신고한 업무의 내용

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

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.

⑧ 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매출액이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수익·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1. 가맹점수수료 수익
2. 카드자산과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
3. 연회비 수익

제26조(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)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·운용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- <신 설>

제26조(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, 금융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

<신 설>

제26조의2(신용카드 단말기 기술 기준) (생략)

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 
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 
한다.

8. 약관의 제·개정 절차, 관리방  
법,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 
약관의 작성·운영에 관한 기  
준을 정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2(약관의 개정 등) ① 법  
제54조의3제1항제5호에서 “금  
용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 
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
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  
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
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기존 금융약관의 명칭만 변  
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 
경우

2.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 
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  
공하는 제휴업체의 휴업·부  
도·파산으로 제휴업체를 변  
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 
경우

3. 법령 및 고시의 제·개정에 의  
해 약관을 제·개정하는 경우

4.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약관  
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  
등이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

에 따라 보고한 약관의 내용  
과 같은 경우

5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 
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  
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 
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  
정하는 경우

②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제1  
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  
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 
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  
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한다  
(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  
는 기간, 법 제54조의3 제5항 내  
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 
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  
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. 다만,  
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수리  
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약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 
내용이 불충분하여 약관심사  
를 계속하기 곤란하여 보완이  
필요한 경우

2. 약관의 법령위반 여부 등이  
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  
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 
필요한 경우

3. 약관이 사실상 신규업무를

영위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금융업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
4. 약관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

5. 기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

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통지한다.

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법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

<p><u>제26조의3(정보기술부문 및 전자 금융업무에 관한 기준) (생략)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정 또는 보완하고 이를 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6조의3(신용카드 단말기 기술 기준) (현행 제26조의2와 같음)</u></p> <p><u>제26조의4(정보기술부문 및 전자 금융업무에 관한 기준) (현행 제26조의3과 같음)</u></p> <p><u>제26조의5(광고 등) 시행령 제19조의14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15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는 신용카드회원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이 사망, 질병, 실업, 자연재해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(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한 채무에 한함)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업무를 말한다.</u></p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
연 락 처	(02) 2156 - 9853